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0010063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0-12-1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4-25



해와달케어 정보공개서

해와달케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해와달케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975-0010/02-949-7004

F A X : 02-949-700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관리팀 / 02-975-0010

홈페이지 : www.haedal.co.kr

본사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40, 501호(공릉동)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 지



해와달의 가족이 되시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복속에 태어난 아기와 힘든 산고의 시련을 용감하게도 이겨내신 모든 산모님들께 깊은 애정을 표합니다.

지난 2004년 경기도 구리, 남양주에 계시는 산모님들과 함께 태어난 저희 해와달은 현재 여러 가맹점을 개설했으며, 많은 산모님들께 보다 건강한 산후회복을 위한 큰 몫을 당당히 해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산모님들의 근심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이제 해와달은 작은 동지를 발판삼아 전국적으로 보다 큰 꿈을 펼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박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으며 진정한 산모들의 성공하는 산후조리를 위해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해와달케어 유정란 드림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해와달케어	해와달케어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40, 501호(공릉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10.11	2022.10.07	유정란	02-975-0010	02-949-7004
	법인등록번호	110111-8446208	사업자등록번호	294-88-0279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유 정 란 (주)해와달케어	해와달케어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40, 501호(공릉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유정란	02-975-0010	02-949-700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 사	유 윤 정 (주)해와달케어	해와달케어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40, 501호(공릉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유정란	02-975-0010	02-949-700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본점)해와달출장산후조리	해와달출장산후조리	2023.4.1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44, 402호	유정란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해와달케어	
상 호	해와달케어 OO점	
상표(서비스표)	 행복한 미래의 첫걸음 (주)해와달케어	등록번호 제40-1939641-0000호
광 고	상 동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9,891	0	9,891	0	-110	-109
2023년	12,747	2,796	9,951	35,703	52	60
2024년	21,191	15,823	5,368	38,830	-4,590	-4,583

근거자료는 별지 #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사항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유정란	대표	2022.10월 ~ 현재	대표	회사 업무 총괄
비관련 임원	유윤정	감사	2022.10월 ~ 현재	감사	감 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 원 수 (명)		직 원 수 (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1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해와달케어	당사 상표, 영업표지 대가	출원일자 2021.06.04	출원번호 제40-2021011-5607호	유정란	2032.11.25
		등록일자 2022.11.25	등록번호 제40-1939641-0000호		

상기 지식재산권은 가맹본부가 상표권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06년 8월 8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8년 6월

2. [해와달케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해와달출장 산후조리	해와달출장 산후조리	유 정 란	2004.09~2012.2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517-31 402호
해와달출장 산후조리	해와달출장 산후조리	유 정 란	2012.02~2018.06.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517-31 402호
(본점)해와달출장 산후조리	해와달출장 산후조리	유 정 란	2018.06.~2023.04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44, 402호
(주)해와달케어	해와달케어	유 정 란	2023.04.~현재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40, 501호

3. [해와달케어]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해와달케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유아관련	출장산후조리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7	4	3	7	4	3	5	2	3
서울	3	-	3	3	-	3	3	-	3
부산	1	1	-	1	1	-	1	1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1	1	-	-	-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위 표의 직영점은 양수도 이전 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입니다.

5. 최근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4	0	0	0	0	4
2023	4	0	0	0	0	4
2024	4	0	0	2	0	2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2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1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1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당사의 정책상 가맹점사업자의 금융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8.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2	7년 6개월(2,740일)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일반현황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부산/경남	해와달케어	부산 수영구 광안4동 775-1 해정원룸 307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혜영	051-758-6277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06.8.8 ~ 기간제한없음.	○	X	X

10.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판촉	-	(비공개)	860	860		

11. 가맹금 예치 기관

예치기관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태릉역지점)	기업담당	서울 노원구 공릉동 577-8	02-974-437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최초 가맹금

내역	금액 (천원,VAT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6,5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영업표지 사용료는 미경과 잔여계약기간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 환되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 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나머지 대가는 서비스 제공 전 일 경우 반환됨	계약기간 내에 가맹 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로 계약이 해지된 경 우, 또는 귀책사유가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 서비스 제공 이 개시된 경우	
교육비	4,950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 환되지 않음	
[총액]	21,450				

※ 가맹비는 영업표지 사용대가(50%), 최초교육대가(30%), 개업지원 및 홈페이지게재 대가(5%), 초도물품
대가(10%), 전단지 등 자료제공대가(5%)로 구성됨

2) 보증금.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내역	금액 (천원)	지급기한	가맹점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미수금, 기타 홍보비 등의 미수금의 제외하고 반환	별도의 이자 가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단위: 천원,VAT포함)

: 예치가맹금 [23,450] = 가맹금[21,450] + 보증금[2,000]

4)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내역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2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천원,VAT포함, 약10평 기준)
필수설비	자체시공			-	-	
간판	자체시공	2,000		-		※간판시공 시 당사 BI기준 준수
인테리어	자체시공	1,000		-	-	
POS 및 전산설비	가맹본부	1,000		설치 전	미설치	※POS, 프로그램, 휴대용단말기
사무실집기류	자체시공	1,000		-	-	※매장에 따라 차이 가 있을 수 있음
[총액]		5,000	500			

※ 별도비용 : 부동산임대비용 등

※ 당 가맹사업은 출장상후 조리원으로 매장의 크기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중요주의] 상기 금액은 추정치이며 점포구조나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음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입지 선정 → 본사 담당자 배정 → 기존 가맹점 영업구역과의 영업지역권 조사 → 점포판단 → 영업지역권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경우 점포 확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인력관리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따뜻한 인품의 소유자. (학력:고졸이상, 기본적인 전산관리능력 보유자)	교육 기준과 같으며, 당사의 운영자 교육을 이수한 자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나 베이비시터의 기본 소양을 갖춘자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 방법.공급 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가맹금의 분할납부 제도 :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가 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영업 중 정기 또는 비정기 지급비용

구분	지급대상	금액 (VAT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 아래의 기준 참조	※ 아래의 기준 참조	후불로 반환없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월 100,000원	매월 25일	1년 동안 광고 미 집행 시	광고 집행 시 반환안됨	전국광고
교육훈련비 및 워크샵	가맹본부	실비수준	교육실시 3일이전	교육일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안됨	※교통비, 숙박비 별도
POS사용료	지정업체	실비수수료	별도계약			
휴대용단말기	지정업체	실비수수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환경개선에 따른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당사의 기준에			VII. 1.

간판변경 비용		따라 부담	따라 부담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자연이자	해당없음					

※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하고 있음

※ 로열티 규정은 아래와 같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을 (2024)년도에 수취한 바 없습니다.

구 분(기준 : 2024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재고관리·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없음

※ 로열티 규정에 따라 로열티가 발생될 수 있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음.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함.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과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함.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음.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
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것임.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
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함.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운영권을 양도받는 양수인이 당사로 **교육비[4,950]천원(부가세포함)과 보증금[2,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함. 단, 양수인이 신규로 원할 경우 신규에 준하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

4) 그 밖의 부담 비용

계약 종료 후 조치 :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관련 계약조문 제15조

- 상표, 광고지, 상호 기타 사용물의 사용금지 및 철거
- 회사 비방 행위 금지
- 가맹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프로그램 삭제
- 본부로부터 구입 하였거나,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 구입비는 반드시 완불하고, 사
용한 물품에 대한 처분은 본부와 상의 후 실행한다.
- 계약이 종료가 된 이후에도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인수 . 인계 등 최선을 다하여야
협조하여야 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주의]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함

1.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주의] 상기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고 동의를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를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이 없습니다.

순 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 분
		상 한	하 한	
1	-	-	-	-
2	-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와달케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 칭	관 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 고
-	-	-	-	-
-	-	-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 고
-	-	-	-	-	-
-	-	-	-	-	-

- 2) 당사가 [해와달케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 고
-	-	-	-	-	-	-
-	-	-	-	-	-	-

3.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 내용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상품·용역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산모케어 등 (※상품·용역은 별첨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

[참고]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귀하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해당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	권장가격(단위:원)	가격통보 방법	비고
산모케어 등 (※ 별첨 판매상품 참조)	(※ 별첨 판매상품 참조)	사전 E-mail 통지 (수정 시 홈페이지에 공지)	소비자가격은 본사의 중요 권장사항이며 지역 특성상 또는 경쟁력 제고 등으로 조 정이 필요할 경우 본사와 사전협의가 필 요함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실시와 그 구체적인 내용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산후조리와 베이비시터 업종	해와달케어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기준	설정방법
상호 협의하여 별첨 (통상 동단위 행정구역 당 1개)	합의한 내용의 별첨이 있을 경우 별첨을 우선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음.**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음

-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 또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건당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해와달케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 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대리점			
일반 소매점			
기 타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 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 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

당사의 [해와달케어] 브랜드는 서비스 업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후 재계약(갱신)의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⑧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중요의]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짐.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음.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5조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용역 및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당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① 계약 종료 사유 - 기간 만료, 종료절차 - 상기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참조

②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12조
○ 가맹계약상의 로열티 등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이 본부의 지시나 담당 직원의 지시를 위반 하였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서비스의 부실제공으로 고객서비스 클레임이 년에 3회 이상 있는 경우 ○ 가맹점이 본 가맹계약서나 로열티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지절차 :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함.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임.

[중요의]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12조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로 처리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가맹사업의 유지 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

- 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음

당사의 협의절차는 다음과 같음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환매제도가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의 : 가맹본부)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본부 직원 입회하여 양수도 계약 체결 → 금액입금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잔여계약기간 동안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됨.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대리행사·위탁 등 (문의 : 가맹본부)

구분	가능여부	이전범위	절차	비고
상속	계약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한 자에 대해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자, 가맹본부의 상속에 관한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인에게 별도의 교육비 부담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문의 : 가맹본부)

- 1)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지역에서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동일 업종을 운영 못함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산후조리와 베이비시터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영업시간	영업일수(강제)	비고
9시 ~ 오후7시	연중무휴	(문의 : 가맹본부)

※ 가맹본부에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고객의 전화에 불응하거나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주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권장산후관리사 수 : 10인 이상, ○ 직접근무 여부 : 가맹점사업자 직접근무, ○ 대체인력 : 해당없음

-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담당 : 운영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본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됨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20%	광고비 총액의 80%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매월 광고비 입금 → 광고 → 매년 광고시행 내역 홈페이지에 공고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전국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40%	광고비 총액의 60%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계획과 소재 등을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사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음.

[주의]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 계약조문 제12조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일금 일십만원(₩10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소요기간, 소요비용

필요한 절차		소요기간	소요비용
구분	내용		
가맹희망자 문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9p~11p 참조]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체결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예치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10일	
초도물량입고	- 운영에 필요한 초도물량 입고	개설 1일 전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개설	
[합계]		추정치 약20일 내외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됨.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문의 : 가맹본부)

분쟁해결절차	비고
분쟁 발생→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 면담→ 당사 조정안 제시→ 조정안 수락 시 분쟁 종료	

※ 상기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관련 계약조문 제20조
○ 본 계약서상의 분쟁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해당없음				
무상대여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차후 진행시 사전협의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 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 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 여부
개업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서비스 마인드 기술적 지식 배양	실습교육 집단 강의 또는 개별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 하기 이전까지 이수하여 야 함	필수 교육
수시교육	교육서비스, 영업방침변경 등 가맹점 유지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또는 개별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 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워크샵	교육서비스, 영업방침변경 등 가맹점 유지교육	집단 강의 또는 개별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 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 수시교육, 워크샵도 필수교육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함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 교육·훈련비용

구분	최소기간	비용 (단위:천원, VAT포함)	비고
개업교육	15일	4,950(1인 기준)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교육	3일	실비 [통상 년3회(1회 1일, 1인)]	필수적으로 이수
워크샵	1일	실비 [통상 년1회(1회 1일, 1인)]	필수적으로 이수

※ 수시교육, 워크샵은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통지 하며,
교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임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함.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음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불참할 경우 불이익

관련내용	관련 계약조항
○ 당사가 정한 필수교육 불참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됨	제11조
○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제5조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노원본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40, 502호
2	서울	중랑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57길 60, 303호
3	서울	도봉점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7길 2, 979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0년 7개월(3,866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54,711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 지

- | | |
|--------------------------|-----|
|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별-1 |
| 2. 가맹점사업자의 판매 상품 리스트 | 별-2 |
| 3. 상 품 및 서 비 스 가 격 | 별-3 |
| 4.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 별-4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사업자의 판매 상품 리스트

● 서비스종류

산모 케어, 산모 좌욕, 산모 마사지,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목욕.수유, 큰아이 돌보기, 아빠 . 기타가족서비스, 보조 업무(청소, 세탁, 음식), 시장보기

● 서비스가격

구분	이용형태(일반형)			
	출퇴근형		입주형(산모님택 상주)	
	주5일(월~금)	토요일 추가	주5일(월~금)	토요일 추가
1주	720,000	100,000	1,190,000	290,000
2주	1,420,000	200,000	2,300,000	580,000
3주	2,120,000	300,000	3,410,000	870,000
4주	2,820,000	400,000	4,520,000	1,160,000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해와달케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_____ (인) 또는 서명

..... ○ (절취선)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해와달케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_____ (인) 또는 서명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구분	점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